

# 방 송 통 신 위 원 회

## 심 의 · 의 결

안건번호 제2023 - 08 - 021호

안 건 명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

피 심 인 (사업자등록번호 : )

대표자

의 결 일 2023. 3. 21.

주 문

피심인을 고발하지 아니한다.

이 유

### I. 기초 사실

#### 가. 피심인의 일반현황

피심인은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'위치정보법'이라 한다) 제5조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고,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.



## 2. 위법성 판단

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인위치정보사업을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, 피심인이 법적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만 신고한 상태에서 '17년 12월부터 개인위치정보사업을 영위한 행위는 위치정보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.

## IV. 고발 여부 검토

### 1. 벌칙 규정

위치정보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.

### 2. 고발 여부 검토

수집한 개인위치정보를 직접 이용하고 다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의무가 없다고 오인한 점, 실태점검 중 위반사항을 인지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을 완료하여 자진 시정한 점을 참작하여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다.

## V. 결론

피심인의 위치정보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2023년 3월 21일

위원장	한 상 혁	
부위원장	안 형 환	
위원	김 현	
위원	김 효 재	
위원	김 창 룡	